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527
----------	------

제출년월일 : 2018년 6월 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급식비)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나. 예탁금 원금의 일부 회수를 통해 여유자금(예치금)을 확보하여 하반기 체육 진흥 관련 긴급한 사업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고자 함.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수입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지출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전입금	6,740	6,740	6,740	6,740	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6,100	6,795	6,645	6,645	0
예탁금회수	0	0	0	4,000	4,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2,023	2,861	2,357	2,861	504
예치금수	1,661	2,331	2,331	2,331	0	기본경비	10	10	10	10	0
이자수입	865	865	865	865	0	예치금	1,133	270	924	4,420	3,49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임지은 (☎ 2133-2682)